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

공보담당 부장검사 김상문

전화 043-841-4325 / 팩스 043-841-4601

보도자료

2025. 1. 15.(수)

제목

132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, 대출브로커 등 13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(지청장 강민정)**은,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약 13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직 **농협은행 지점장** 등을 수사하여 **2명을 구속 기소**,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'24. 12.~'25. 1. 총 **13명을 기소**하였음
- 이 사건은 농협은행 지점장 등이 대출브로커 및 감정평가사 등과 유착하여 수년에 걸쳐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중대범죄임
 -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직접수사하여, 전직 **농협은행 지점장**, **농협은행 여신팀장**, **대출브로커**, **감정평가사** 등이 불법 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규명하였음
 - 특히, 대출브로커 등이 **감정평가법인 직원**에게 금전을 공여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조작하도록 유도한 사실, **감정평가사**에게 특정 가액의 감정평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, 은행 지점장이 **대출 차주에게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교사**한 사실 등도 밝혀냈음
-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대출을 자행하여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

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

1. 피고인 (총 13명)

연번	피고인	지위	죄명	처분
1	A	前 농협은행 여신팀장	특경법위반(사기/배임)	불구속 기소 (금감원 고발)
2	B	前 농협은행 지점장	특경법위반(사기/배임), 사문서위조교사, 위조사문서행사	<u>직구속 기소</u> (금감원 고발)
3	C	대출 차주 겸 대출브로커, 부동산개발업	특경법위반(사기/배임/증재등)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배임증재, 감정평가사법위반	<u>직구속 기소</u> (검찰 인지)
4	D	무직 (C의 동생)	특경법위반(배임)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	불구속 기소 (검찰 인지)
5	E	甲감정평가법인 직원	배임수재, 감정평가사법위반	
6	F	무직	배임증재	
7	G	건설업	특경법위반(사기/배임)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배임증재	
8	H	건설업	특경법위반(사기)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	
9	I	자영업	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	
10	J	사업	감정평가사법위반	
11	K	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	감정평가사법위반	
12	L	금융업	감정평가사법위반	
13	M	일용직	감정평가사법위반	

2. 주요 공소사실

● 前 농협은행 지점장 등 전직 농협은행 직원 2명 기소

- [피고인A] '18. 5.~9.경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농협은행에 C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차주를 내세웠다는 사실 등을 알고도 4회에 걸쳐 약 46억 원을 불법 대출하여 [특경법위반(배임/사기)]
- [피고인B] '21. 4.~'23. 6.경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농협은행에 C 등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고도 C 등에게 11회에 걸쳐 약 91억 원을 불법 대출하여 [특경법위반(배임/사기)]

● 대출브로커 겸 대출 차주 등 5명 기소

- [피고인C] '18. 5.~'23. 6.경 농협은행 직원인 A, B와 공모하여, 허위 차주를 내세우고 위조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 직원에게 금전을 공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약 1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[특경법위반(배임/사기)]
- [피고인C, D] '22. 3.~'23. 6.경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하여 담보물 매매계약서 7부를 위조하여 농협은행에 제출하여 [사문서위조 · 행사]
- [피고인G] '22. 3.~6.경 농협은행 지점장인 B 및 C와 공모하여,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약 2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[특경법위반(배임/사기), 사문서위조 · 행사]
- [피고인H] '22. 8.경 농협은행에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[특경법위반(사기), 사문서위조 · 행사]
- [피고인I] '22. 11.경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농협은행 지점장인 B의 교사에 따라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[사문서위조 · 행사]

● 감정평가사,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기소

- [피고인C, E, F, G] ① C, F, G는 '21. 3.~'23. 6.경 甲감정평가법인 직원인 E에게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달라고 청탁하며 6,850만 원을 공여하고, ② E는 이를 수취하여 [배임중재, 배임수재]
- [피고인C, E, J, K, L, M] ① C, E, L, M은 '24. 7.경 乙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K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고, ② K는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주고, ③ C, J는 '24. 4.~7.경 丁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2회 요구하여 [감정평가사법위반]

II

수사 경과

- '24. 5. 23. 금융감독원의 피고인 A, B에 대한 고발사건 접수
※ 5. 10. 대검찰청에 고발
- '24. 7. 8. 농협은행의 피고인 B에 대한 고발사건 이송 접수
※ 3. 5. 총주서에 고발
- '24. 8.~9. 계좌추적, 고발인 조사, 피고인들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
- '24. 9.~12. 피고인C 등 5명 추가 인지
- '24. 12. 11. 피고인B, C에 대한 각 구속영장 발부
- '24. 12. 27. 피고인A, B, C, D 기소(1차 기소)
- '25. 1. 7. 피고인H 등 7명 추가 인지
- '25. 1. 15. 피고인B, C 등 11명 불구속 기소(2차 기소)

III

수사결과 및 의의

- 전직 농협은행 직원 2명, 대출브로커, 실차주 등 13명 기소
 -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, 신속한 압수수색, 면밀한 계좌추적, 다수의 대출 관여자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로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임을 밝혀 내어 피의자 12명을 추가 인지하고, 前 농협은행 지점장, 대출브로커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하였음
 - ※ 감정평가법위반 피의자 1명 기소중지
- 철저한 수사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밝혀냄
 - 대출브로커 겸 대출 차주인 C는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자 농협은행 여신팀장인 A, 지점장인 B와 결탁하여, 허위 차주를 내세우고, 담보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'18.~'23. 사이 132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냄

- 심지어, 농협은행 지점장인 B는 대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 차주 I에게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며, 농협은행 여신팀장이었던 A는 퇴직 후 C 운영의 법인에서 근무하였음

- **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직원의 불법행위 적발**

- 甲감정평가법인 직원인 E가 대출 차주인 C로부터 약 2년 동안 금전을 수수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, 그 감정평가서들을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밝혀냄
- 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K가 대출 차주인 C, 브로커인 L, M 등으로부터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받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었음

I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대출을 자행하여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하여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■■■